

# 대전지방법원

## 제4민사부

### 판 결

사 건 2005가합11491 구상금  
원 고 ○♣♣♣♣♣♣♣♣주식회사  
서울 종로구 00동 \_  
대표이사 이◇○  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 
피 고 ▷♠주식회사  
대전 유성구 00동 \_\_\_-\_\_  
대표이사 강□■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 
담당변호사 나경수  
변 론 종 결 2006. 4. 6.  
판 결 선 고 2006. 4. 27.

#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80,000,000원 및 위 금원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05. 1. 1. 부터, 8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05. 7. 7.부터, 각 2006. 4. 27.까지는 연 5%, 그 다

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83,877,000원 및 위 금원 중 103,080,000원에 대하여는 2005. 1. 1.부터, 8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05. 7. 7.부터, 797,000원에 대하여는 2005. 7. 23.부터,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# 이 유

#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♥◆◆◆◆(이하 ‘♥◆◆◆◆’라 한다)와 사이에, 2004. 3. 31. ♥◆◆◆◆ 소유의 대전 서구 갈마 1동 \_\_\_-\_\_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\_\_층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피보험자 ♥◆◆◆◆, 보험가입금액 6,450,452,240원, 보험기간 2004. 3. 21.부터 2005. 3. 21.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, 2004. 4. 2. 이 사건 건물 및 위 건물 내에 있는 기계 및 시설물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피보험자 ♥◆◆◆◆, 보험가입금액 9,777,586,080원, 보험기간 2004. 3. 21.부터 2005. 3. 21.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.

나. 피고는 2003. 8. 8. ♥◆◆◆◆로부터 이 사건 건물 \_\_층 중 100평(이하 ‘이 사건

사무실'이라 한다)을 임차기간 2003. 8. 8.부터 2005. 4. 30.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.

다. 2004. 7. 20. 23:45경 이 사건 사무실에 화재(이하 '이 사건 화재'라 한다)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, 위 화재는 사무실 우측 책상 4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만 추정될 뿐 그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아니하였고,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바닥을 통해 인입된 콘센트 배선에 단락흔이나 전기적인 발열현상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서 배선의 절연 손상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하였다.

라.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80,032,35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♥◆◆◆◆에게 2004. 12. 30. 100,000,000원 및 2005. 7. 6. 80,000,000원을 각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1 내지 5, 7, 9, 10, 13, 14호중의 각 기재(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주장 및 판단

### 가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(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 소실됨으로써 피고가 ♥◆◆◆◆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, 피고는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♥◆◆◆◆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, 한편 보험자인 원고는 ♥◆◆◆◆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범위 내에

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된 보험금 1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(2)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조사비로 지출한 3,080,000원 및 원고가 ♥◆◆◆를 상대로 화재보험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797,000원에 대해서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,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할 뿐이고, 손해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(상법 제676조 제2항)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#### 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피고는,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내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한 누전 내지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화재가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한 누전 내지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♣☆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(2) 피고는 또한,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퇴근할 때 모든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였고,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직원들이 모든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퇴근하는 등 이 사건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,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□△, 정♣☆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,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80,000,000원 및 위 금원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. 1. 1.부터, 8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. 7. 7.부터,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6. 4. 27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 허용석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 오명희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 이종록 \_\_\_\_\_